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4. 18 선고 2023가단1258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영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흥 담당변호사 박소현

변 론 종 결 2024. 3. 21.

판 결 선 고 2024. 4. 18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생년월일 D) 사이에 체결된 2023. 6. 29.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 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○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24068 판결 채권 4,121,570원 및 그중 1,739,372원에 대한 2023. 9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갖고 있다.

○ C의 아버지인 E는 2022. 12. 12. 사망하였는데,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아파트’라 한다)이 있고,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, 자녀인 C, F이 있으며,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가 7분의 3, C, F이 각 7분의 2 이다.

○ 피고와 C, F은 2023. 6. 29.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전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는 2023. 6. 30.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2. 12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○ 그 당시 C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금융기관, 세무서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, 위 부동산의 상속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.

2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상속분인 7분의 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민수

별지